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easylaw.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는 **2025년 1월 현재 서술형 279건, 사례형 18건 등 총 297건**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정보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웹페이지 **http://easylaw.go.kr.** 모바일앱 **Smart 생활법률』**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KOR 법 제 처 www.moleg.go.kr

선거권자(유권자)

Q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나요? 또,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A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일 현재 형사처벌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선거권

■ "선거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및 〈법령용어검색〉, 한국법제연구원).

■ 선거별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
-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권만 해당)

※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7조).

선거권이 없는 사람

■ 선거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금치산선고(다만, 2018년 7월 1일부터 해당 선고는 효력이 없음)를 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
  - ☑ 선거범
  - ☑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Q 저는 올해 처음 선거권이 생겼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투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KOR 법 제 처 www.moleg.go.kr

투표소

■ 투표소는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의 투표구마다 설치되고, 주로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 · 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그 밖에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됩니다(「공직선거법」 제147조제1항·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본인의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검색할 수 있고, 집으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

■ 투표시간은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오후 8시)까지이지만, 투표 마감 시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번호표를 부여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감염병 및 지정 감염병에 걸려서 입원치료·자가(自家)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감염병이 의심되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은 투표소에서 오후 6시 30분(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오후 9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5조제6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안내문 발송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관할구역안의 각 세대에 발송하고,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가 있는 세대에는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3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 시 금지되는 행위

■ 선거일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3조, 제166조, 제166조의2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아래의 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2호).

구분	내용
투표소 출입제한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음
소란언동 금지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경우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할 수 있으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당할 수 있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지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음
투표지 촬영 금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Q 해외여행 일정을 잡아뒀는데, 대통령 선거일과 겹칩니다. 여행을 취소할 수는 없는데 투표는 꼭 하고 싶어요.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선거 당일 외국에 머무는 사람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본 선거일 전에 실시하는 사전투표를 통해서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여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 등은 제외)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 국외부재자 신고는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150일 전부터 선거일 60일 전까지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해야 하며, 신고기간에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공관(公館)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법 제 처
www.moleg.go.kr

국외부재자 투표 방법

■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하 "재외투표기간"이라 함) 동안 재외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방문하여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1항).

- 투표시간은 재외투표기간 중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7항 본문).

※ 그 밖에 국외부재자 신고 및 투표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s://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은 별도의 신고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함) 전국 어디서나 읍 · 면 · 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제15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제2항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투표시간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투표 마감 시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번호표를 부여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5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Q 회사에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 당일 모두 정상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투표를 하러 다녀오는 시간 동안은 무급 처리를 한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A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그 시간은 휴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고용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권 행사의 보장

■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참고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에 따라 고용된 사람이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2제1항·제2항).
※ 이를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제1호).

■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2제3항).

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감염병 및 지정 감염병에 걸려서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감염병이 의심되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도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할 수 있으며, 선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이 마련됩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3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KOR 법 제 처
www.klaw.go.kr

Q 선거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현재, 제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더욱 홍보하고자 후보자의 얼굴을 사용해 AI 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 게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아니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운동

■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단서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로 전송하는 행위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 등"이라 함)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

- 위 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5항).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음향, 이미지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2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1의3).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음향, 이미지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 등에 표시하지 않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4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음향, 이미지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 등에 표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제4호).

KOR 법 제 처
www.moleg.go.kr



키워드 선거, 선거권, 선거권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선거권 보장, 감염병환자, 투표, 투표안내문, 투표시간, 투표소, 사전투표, 국외부재자투표, 선거운동, 딥페이크영상, 벌금, 과태료